

## V. 휴학, 제적, 복학

### 1. 휴 학

가.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선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,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) 일반 휴학 :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

2) 학기 중 휴학 : 등록 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에 휴학하는 것

※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: 군휴학, 질병휴학,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, 창업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 가능

나. 휴학기간은 석사 4학기, 박사 6학기, 석·박통합과정 8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(휴학원은 1년간 유효함). 단, 다음의 사유에 따른 휴학기간은 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
- 군휴학(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. 단,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봄), 임신·출산휴학(2개 학기), 육아휴학(4개 학기), 질병휴학(4개 학기), 창업휴학(2개 학기), 권고휴학(4개 학기)

다. 다음의 휴학 시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군휴학: 입영영장사본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

- 질병휴학: 질병으로 인한 휴학시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4주 이상의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진단서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해당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를 제출하여야 함. 단,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질병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3되는 날부터 신청일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에 치료를 받은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.

- 임신·출산휴학: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

※ 여학생만 신청가능하며,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함

- 육아휴학: 주민등록표등본 등

※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

- 창업휴학: 성적증명서,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

## 2. 제 적

등록기간 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학연한(석사 4년, 박사 6년, 석·박통합과정 8년)이 초과된 경우에는 제적된다.

※ 제적된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복적(제적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1회) 또는 재입학이 가능함.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됨

## 3. 복 학

휴학자의 복학은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1개월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